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11 선고 2020가합4100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최재희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9. 2. 20. 접수 제5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의 여동생이다.

나. B는 '2016. 1. 8.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수백 내지 수천 명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100회에 걸쳐 1kg 금괴 합계 1,992개(시가 합계 101,584,978,000원)를 밀반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 1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6,944,500,502원, 추징금 101,584,978,000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B는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7. 24. B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B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1,584,978,000원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9노56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이 2020. 1. 30. B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9도11489 판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어머니 C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9. 2. 1. 피고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9. 2. 20. 접수 제5769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라.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B에 대한 101,584,978,000원의 추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2020. 1. 30.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19. 2. 1. 당시에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9. 1. 11. 선고되었고,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한 같은 해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의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은 피고가 그 전 소유자였던 D로부터 매수할 당시 언니 B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이자 실제 공유지분권자는 그 등기명의자인 B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출연한 명의신탁자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는 어머니 C와 함께 2012. 5. 18.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억 1,800만 원에 매수하되, D에게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2. 7. 5.,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2. 8. 6., 잔금 6억 1,800만 원은 2012. 9. 14.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은 B와 피고의 아버지 E가 자신이 가진 돈에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③ B는 2012. 9.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E에게 9,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는 2012. 9. 14. IBK기업은행에서 175,925,000원을 대출한 다음, 같은 날 D에게 위 대출금에 B가 보내온 위 돈과 기존에 자신이 가진 돈을 합하여 마련한 합계 3억 7,2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④ B는 같은 날 D와 만나 나머지 잔금 2억 4,600만 원의 지급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고, 건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서 받아야 할 월 임대료를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였다.

⑤ B와 C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⑥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임차인들의 월 임대료는 B 명의 (주)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어 관리되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신, 판사 고지은, 판사 이창환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G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12.38㎡

2층 112.38㎡

3층 104.18㎡

지층 111.03㎡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G 대 233.1㎡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

1) 원고는 주문 기재와 같은 청구취지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원인으로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는 통정허위표시 무효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른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B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주장하였다.